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2005년도 하반기부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등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 함(안 제3조제1항 신설).
- 나.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.
- 다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예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 신설).
- 라. 건축허가 수수료를 당초금액보다 약 30%를 인상하여 규정함(안 제6조, 별표1).
- 마.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시 당초 안산시 건축사회에 위임하여 지정하였던 것을 안산시에서 직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.
- 바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당초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을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인상함(안 제10조, 별표 2).

- 사.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40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조경의 설치 의무를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제4호).
- 아.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.5~3미터 이하를 이격 하도록 조항을 신설 함(안 제54조).
- 자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함(안 제58조제3항 및 제4항).
- 차. 건축법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·광역시·도에만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(안 제63조 내지 제68조 삭제).

**개정조례안** : 별첨

**신·구조문대비표** : 별첨

**관계법령발췌서** : 별첨

- 『건축법』 제8조의3, 제50조, 제76조의2
- 『건축법시행령』 제5조, 제20조, 제27조, 제80조의2, 제86조
- 『건축법시행규칙』 제10조, 제21조

**관련사업계획서** : 해당없음

**예산수반사항** : 82,650천원(대행수수료)

- 산출근거 : 570건×145,000원 = 82,650천원

**사전예고 결과** : 의견있음(별첨)

- 입법예고 : 2006.10.27 - 2006. 11.17 (21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** : 별첨

- 2006. 09. 15 :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
- 2006. 11. 09 : 건축위원회 심의결과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지방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의한 심의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소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④소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⑤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3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)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예치금(이하 “예치금”이라 한다)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

1. 「주택법」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

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

3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「대한주택공사법」에 의한 대한주택공사, 「한국토지공사법」에 의한 한국토지공사,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건축물

4. 건축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

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축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.

- ③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착공신고시 예치하게 한다.
- ④ 예치금(보증서 포함)은 사용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⑤ 예치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건축허가 수수료)”를 “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은 안산시건축사회에 위임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“확인업무는 안산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가 대행한다.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다.”로 하며,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” 을 “별표 2의 규정에 따른 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” 을 “보존녹지지역안”으로 한다.

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(대지안의 공지)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.

제58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3조 내지 제68조를 삭제한다.

제6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83조” 를 각각 “법 제69조의2”로 하며, 동조제1항 중 “영 제121조” 를 “영 제115조의2”로 한다.

“별표 1” 을 별지와 같이 하고, “별표 2” 및 “별표 3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소관 실 · 과		건축과
입 안 자	실·과 장 직위 · 성명	건축과장 신원남
	담 당 성 명	주택관리담당 김현태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진식 (481-2913)

【별표 1】

## 건축허가 등 수수료(제6조 관련)

연면적 합계	금 액
2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4천원
	기 타 9천원
2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6천원
	기 타 2만원
1,000제곱미터 이상 5,000제곱미터 미만	5만원
5,000제곱미터 이상 10,000제곱미터 미만	10만원
10,000제곱미터 이상 30,000제곱미터 미만	20만원
30,000제곱미터 이상 100,000제곱미터 미만	40만원
100,000제곱미터 이상 300,000제곱미터 미만	80만원
300,000제곱미터 이상	160만원

\*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

[별표 2]

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(제10조 관련)

검사대행 전축물 연면적	검사대행 소요시간
660제곱미터 미만	4시간
660제곱미터 이상 ~ 2천제곱미터 미만	6시간
2천제곱미터 이상 ~ 5천제곱미터 미만	8시간
5천제곱미터 이상 ~ 1만제곱미터 미만	12시간
1만제곱미터 이상 ~ 3만제곱미터 미만	16시간
3만제곱미터 이상 ~ 5만제곱미터 미만	20시간
5만제곱미터 이상 ~ 10만제곱미터 미만	24시간
10만제곱미터 이상 ~ 30만제곱미터 미만	28시간
30만제곱미터 이상	32시간

\* 해당 전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당해년도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(1일 8시간)의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백원단위 이하는 버림)으로 한다.

[별표 3]

### 대지안의 공지(제54조 관련)

####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
가.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</li> <li>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li> </ul>
나.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업지역 : 1.5미터 이상</li> <li>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 이상</li> </ul>
다.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미터 이상</li> </ul>
라.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미터 이상</li> </ul>
마. 공동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파트 : 3미터</li> <li>- 연립주택 : 2미터</li> <li>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li> </ul>
바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미터 이상</li> </ul>

## 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
대상 건축물	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
가.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미터 이상</li> </ul>
나.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업지역 : 1미터 이상</li> <li>-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1.5미터 이상</li> </ul>
다.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),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 및 종교시설. 다만,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.5미터 이상</li> </ul>
라.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.5미터 이상</li> </ul>
마. 공동주택(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파트 : 3미터 이상</li> <li>- 연립주택 : 1.5미터 이상</li> <li>- 다세대주택 : 1미터 이상</li> </ul>
바.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0.5미터 이상</li> </ul>

#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3조(지방건축위원회) &lt;신 설&gt;</p> <p>②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지방건축위원회) ①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지방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의한 심의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	<p>제3조의2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</p> <p>③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소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⑤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제3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신 설>	<p><u>제5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)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관리예치금(이하 “예치금”이라 한다)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</u></p> <p>1. 「주택법」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</p> <p>2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 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</p> <p>3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「대한주택공사법」에 의한 대한주택공사, 「한국토지공사법」에 의한 한 국토지공사,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인 건축물</p> <p>4. 건축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축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한다.</p> <p>③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규정하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착공신고시 예치하게 한다.</p> <p>④예치금(보증서 포함)은 사용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⑤예치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「안산시 재무회 계 규칙」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제6조(건축허가 수수료) 법 제11조제2항 규정 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.</b>	<b>제6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----- -----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【별표 1】</b> <b>건축허가 수수료(제6조 관련)</b>	<b>【별표 1】</b> <b>건축허가등 수수료(제6조 관련)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면적 합계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2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단독주택 <u>3천원</u></td></tr> <tr> <td>기 타 <u>7천원</u>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2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단독주택 <u>4천500원</u></td></tr> <tr> <td>기 타 <u>1만5천원</u></td></tr> <tr> <td>1,000제곱미터 이상 5,0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<u>4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5,000제곱미터 이상 10,0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<u>7만5천원</u></td></tr> <tr> <td>10,000제곱미터 이상 30,0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<u>15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30,000제곱미터 이상 100,0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<u>30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100,000제곱미터 이상 300,000제곱미터 미만</td><td><u>60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300,000제곱미터 이상</td><td><u>120만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연면적 합계	금액(원)	2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<u>3천원</u>	기 타 <u>7천원</u>	2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<u>4천500원</u>	기 타 <u>1만5천원</u>	1,000제곱미터 이상 5,000제곱미터 미만	<u>4만원</u>	5,000제곱미터 이상 10,000제곱미터 미만	<u>7만5천원</u>	10,000제곱미터 이상 30,000제곱미터 미만	<u>15만원</u>	30,000제곱미터 이상 100,000제곱미터 미만	<u>30만원</u>	100,000제곱미터 이상 300,000제곱미터 미만	<u>60만원</u>	300,000제곱미터 이상	<u>120만원</u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연면적 합계</th><th>금 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</td><td>단독주택 <u>4천원</u></td></tr> <tr> <td>기 타 <u>9천원</u>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</td><td>단독주택 <u>6천원</u></td></tr> <tr> <td>기 타 <u>2만원</u>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</td><td><u>5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<u>10만원</u>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</td><td><u>20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<u>40만원</u></td></tr> <tr> <td rowspan="2"></td><td><u>80만원</u></td></tr> <tr> <td><u>160만원</u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연면적 합계	금 액		단독주택 <u>4천원</u>	기 타 <u>9천원</u>		단독주택 <u>6천원</u>	기 타 <u>2만원</u>		<u>5만원</u>	<u>10만원</u>		<u>20만원</u>	<u>40만원</u>		<u>80만원</u>	<u>160만원</u>
연면적 합계	금액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<u>3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 타 <u>7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	단독주택 <u>4천50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 타 <u>1만5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000제곱미터 이상 5,000제곱미터 미만	<u>4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,000제곱미터 이상 10,000제곱미터 미만	<u>7만5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,000제곱미터 이상 30,000제곱미터 미만	<u>15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,000제곱미터 이상 100,000제곱미터 미만	<u>3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,000제곱미터 이상 300,000제곱미터 미만	<u>6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0,000제곱미터 이상	<u>12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면적 합계	금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단독주택 <u>4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 타 <u>9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단독주택 <u>6천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 타 <u>2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5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1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2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4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8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160만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	※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9조(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</b>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p>1. 제1항제1호에 의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.</p> <p>2. 제1항제2호에 의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은 안산시건축사회에 위임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자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(생략)</p> <p><b>제10조(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)</b></p> <p>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<u>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</u> 의하여 납부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<u>10분의 5에 해당하는</u> 수수료를 지급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b>제9조(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1. ----- ----- 2. -----  <u>확인업무는 안산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</u> <u>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가 대행한다.</u> <u>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</u> <u>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.</u> 3. 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0조(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)</b></p> <p>①----- ----- ----- <u>별표 2의</u> <u>규정에 따른</u>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12조(대지안의 조경)</b>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(학교, 자동차운전교습소, 공항시설,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) :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. 다만,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</u></p>	<p><b>제12조(대지안의 조경)</b>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보존녹지지역안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b>제54조(대지안의 공지)</b>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.</p>

#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제58조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</b></p> <p><b>제한) ① ~ ② (생략)</b></p> <p><b>③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</b></p> <p><b>축물(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)의</b></p> <p><b>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</b></p> <p><b>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</b></p> <p><b>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</b></p> <p><b>2배이하로 한다.</b></p> <p><b>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</b></p> <p><b>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</b></p> <p><b>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</b></p> <p><b>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뛰어 건축</b></p> <p><b>하여야 한다.</b></p> <p>가.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</p> <p>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</p> <p>이의 0.8배이상</p> <p>나. 채광창(창넓이 0.5제곱미터이상의 창</p> <p>을 말한다)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</p> <p>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</p> <p>다.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[마주보는</p> <p>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</p> <p>창문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</p> <p>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(출입을 위한</p> <p>개구부를 포함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</p> <p>함한다]에는 4미터 이상</p> <p>⑤(생략)</p>	<p><b>제58조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</b></p> <p><b>제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

#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행	개정(안)
<p><u>제63조(설치)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건축분쟁위원회(이하 "조정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	<u>&lt;삭 제&gt;</u>
<p><u>제64조(구성)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조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.</u></p>	<u>&lt;삭 제&gt;</u>
<p><u>제65조(위원장등의 직무등)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u>&lt;삭 제&gt;</u>
<p><u>제66조(회의 등)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.</u></p> <p><u>②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7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<u>③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 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④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 사자 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가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 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u>&lt;삭 제&gt;</u>

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<b>제67조(비용부담)</b>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, 진단, 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조정위원회의 위원, 관련 공무원의 출석, 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감정, 진단,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2. 검사,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3.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,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</p> <p>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때,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68조(운영규정 등)</b>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법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〈삭제〉</p>
	<p>〈삭제〉</p>

## 건축조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69조(이행강제금 부과기준) ①법 제83조제1항 및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 별표15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</li> <li>2. 영 별표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</li> <li>3. 영 별표15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</li> <li>4. 영 별표15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</li> <li>5. 영 별표15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</li> </ul> <p>②법 제8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 총 부과 횟수는 2회로 한다.</p>	<p>제69조(이행강제금 부과기준) ①법 제69조의2 -----영 제115조의2----- -----법 제69조의2----- ----- ----- 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----- 5. ----- ②법 제69조의2----- -----</p>

#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521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12. 11.  
제 안 자 : 도시건설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,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주요골자

- 제3조의2제4항을 삭제함.
- 제5조제2항에 “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,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삽입함.(안 제5조제2항)

# **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3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, 동조의2제5항을 동조의2제4항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축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.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,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의2(소위원회) ① ~ ③(생략)</p> <p>④<u>소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(생략)</p> <p>제5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<u>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축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.</u></p> <p>③ ~ ⑤(생략)</p>	<p>제3조의2(소위원회) ① ~ ③(원안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④(<u>원안 제5항과 같음</u>)</p> <p>제5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)</p> <p>①(<u>원안과 같음</u>)</p> <p>②<u>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축계약서상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.</u>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,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(<u>원안과 같음</u>)</p>